

사회문제에 나타난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덕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Solution of Child Abuse Problems Appearing in Social Problems

Duck-Sun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yupsung University(Ph.D. cand)

요 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주제어 :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회문제

Abstract This study is to see the problem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and sees that the society as a whole needs to find a solution and suggest sol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supple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This can be solved through legal amendments to relevant laws and legislative amendments. Second, institutional complement should be done.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is more urgent for school children than school education for victim child. In the future, children's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child counseling centers for children who are living in homes rather than nursing homes but who have problematic behaviors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children who need professional treatment. Third,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abused children. Results of action for affected children include home care, separation protection, home return, and death.

Key Words : child abuse, victim child, social problems

Received 28 June 2018, Revised 6 July 2018

Accepted 16 July 2018

Corresponding Author: Duck-Sun Kim(Hyupsung University)

Email: 66-70@hanmail.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이 시기의 아동은 발달과정상 가족의 보호 아래 보호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시기이므로 아동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거나와 아동을 둘러싼 보호 양육자로 인한 문제가 동시에 아동의 문제로 전이된다. 아동기에는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양육자를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아동빈곤, 장애아동 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김지미 외, 2016: 178)[8]. 최근 들어 아동학대문제는 더 이상 아동 관련단체나 교육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 전체가 중지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사’로 치부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사례 10건 중 8~9건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110)[16].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은 4,458건으로 44.5%였으며, 대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건 2.7%, 43건 0.4%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 장소의 대부분인 86.9%는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4.9%는 소위 ‘부모’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후유증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서적 손상까지도 수반하며, 일평생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무관심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고,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의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그 명칭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의 체계화와 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히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이순형 외, 2014: 235)[20].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문제의 이해

오늘날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개개인에게 가벼운 불편함에서부터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 범위가 넓다(김근홍 외, 2014: 21)[4].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와 대조를 이룬다. 물론 공통적으로 개인 또는 소속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개인문제(personal problem)는 그것의 원인과 해결책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인접한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데 반해, 사회문제(social problem)는 그것의 원인과 해결책이 사회구성원 상호 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박철현, 2016: 4)[14].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문제와 사회문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 사례로 전염병의 경우, 감염된 당사자는 개인문제일 수 있지만, 보건당국 등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사회문제화한다. 이처럼 같은 현상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고, 사회문제로 규정될 수도 있다(김보기 외, 사회문제론: 12)[5].

결론적으로 사회문제에 나타나는 어떤 객관적 속성이나 조건은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규정되는 사회문제들 모두 포괄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특정 상황에 대해 사회문제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문제를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사례를 보면, 노병일(2013)[10], 김근홍 외(2014)[4], 박용순 외(2014)[13], 표갑수(2014)[27] 등의 저작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볼 때, 아동문제는 사회문제의 하위영역인 생애주기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2 아동학대의 이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관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아

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그 사회가 담고 있는 부모상과 부모역할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준,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구하는 분야와 시대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김석조, 2015: 9)[6].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대예방법」(CAPTA)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법 역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제2조 제4항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제3조 제7항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2.3.1 사회적 학대

아동학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찬엽, 2011: 349)[22].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폭력의 행사는 학습적인 측면이 농후하다. 부모의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아버지의 경우 66.8%, 어머니의 경우, 78.2%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이고 그 밖에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합산하면 발생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아동학대는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경험에 의한

산물이며, 환경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이다. 아버지의 경우 68% 내외, 어머니의 경우 78% 내외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음주에 의한 폭력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음주에 의한 폭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정서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에서 남자보다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족에 대한 소외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의사결정을 누가 하나냐에 따라 혼자 결정하거나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학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유경, 2008: 34)[7]. 이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집착과 소유의식이 매우 높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된다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넷째, 가족유형 원인을 들 수 있다. 편부가정 31.4%, 일반가정 25.5%, 편모가정 10.3% 등으로 나타났다. 편부는 편모의 경우보다 3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 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허경미, 2003: 240)[28].

다섯째, 경제적 만족도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가족유지비용과 사회활동비용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개인적 허탈감과 사회적 괴리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평등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자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행동이 지속되고 반복됨으로써 가정의 균열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2.3.2 정신적 원인

아동학대는 부모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성격구조와 심리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결함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그 원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적대성, 타인에 대한 비난, 무시, 과잉기대 등에 의해 학대로 나아갈 수 있다(이복희, 2007: 102)[19]. 또한 부모가 정신질환을 가졌거나 평범하지 못한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부모의 기대수준이 클수록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학대는 증가하게 된다.

이복희(2007: 103)[19]는 “여기에서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소외의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등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한 정신적 병리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부모는 아동학대를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부모의 의학적 병력이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3.3 아내학대에 따른 중복학대

이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 아동에 대한 학대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은 아동에 대한 폭력과 밀접한 성질을 갖는다.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정혜숙(2009: 111)[24]에 따르면,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복 발생률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컴퓨터주여성의 경우에는 90%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점은 아내구타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종전에 비하여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는 소극적 남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역할의 정체성에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낮고 가부장적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정혜숙, 2009: 114)[24].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남성의 경우 학대에 따른

책임의식의 결여와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부각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무의식적 비판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자식을 유기한 것과 생부가 같은 행위를 했을 때의 비난의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의 문제의식의 가시화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형사정책을 실천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4 아동학대의 유형별 분석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복학대를 제외한 네 가지의 유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2.4.1 신체적 학대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일반적인 것으로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를 들 수 있다. 문영희(2011: 13)[12]는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는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처벌을 사용하는 그 개념의 성격이 다양하다.

신체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화정(2011: 16)[23]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에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여진(2012: 3)[21]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문영희(2011: 13)[12]는 이에 덧붙여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처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의 예로,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

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565)[17]의 발표를 보면, 의사들은 병원에 온 아동으로부터 담뱃불로 지진 화상, 끓는 물에 덴 화상, 골절 흔적, 복부 외상, 안구 손상 등의 고의적인 학대 사례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부모의 80%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체벌의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는 아동의 10%는 타박상, 장골 골절, 장파열, 심지어 두개골 파열 등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의사들은 보고 있다(문영희, 2011: 14 재인용)[12]. 부모의 구타에 의해 자녀가 사망해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상참작이 되어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신체적 학대 징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문영희, 2009: 553)[11], 신체 여러 부위의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자국, 두 눈에 심한 멍, 줄 등으로 목 졸린 흔적, 목에 난 상처, 담뱃불, 양말이나 장갑·다리미 모양의 물체에 의한 화상, 입·입술·팔·다리·몸에 난 열상, 설명할 수 없는 골격손상, 경직되고 부어 오른 관절, 다발성 혹은 나선형 골절,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치아, 이빨로 물린 자국,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흔들린 아기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사지골절 및 안구출혈, 고막파열, 내부 장기파열, 두뇌손상, 사망 등이다.

2.4.2 정서적 학대

일반적으로 가장 정의 내리기 가장 힘든 유형이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이다. 왜냐 하면 정서적 학대는 부모의 불행 원인을 아동에게 전가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정서적 학대는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화정(2011: 16)[23]은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순옥(2002: 24)[1]은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 대한 무시나 거부 혹은 애정이나 칭찬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와 끊임없이 고향을 치거나 위협, 공포, 트집 잡기 혹은 아동에 대한 언어적 거부 등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학대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원성희(1997: 13)[18]는 “정서적 학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반응 또는 가족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등에서 초래하며,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상처를 가하여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학대에는 아동에게 협박을 가하고,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 또는 이중 메시지로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공격을 일삼고,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거나 처벌을 목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형태가 포함된다.

김경우 외(2012: 163)[3]는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언어적·정서적 공격”이라고 정의한다. 이순형 외(2014: 238)[20]는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부모의 편애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이 유형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태도와 관련된 유형이어서 학대에 관한 보고가 가장 덜 이루어진다.

2.4.3 성적 학대

아동의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성인에 의해 계획된 범죄이며,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층 더 주목을 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통된 아동의 성적 학대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으로써 완전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사회 전체의 공통된 인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높은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여진(2012: 3)[21]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한다.

이순형 외(2014: 238)[20]는 “부모나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인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사회적 금기에 위배되는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가족구성원 내에서 발생하는 근친상간을 성적 학대로 해석하며 이에 주목한다.

문영희(2011: 19)[12]는 구체적인 성적 학대에 대해,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

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근친상간은 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언급조차 금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폐되어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2.4.4 방임

아동에 방임(neglect, 유기)은 가장 흔한 유형의 아동학대이며, 광범위한 발생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김지미 외(2016: 182)[8]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등의 신체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등의 의료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의 의무교육 이행을 챙기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강순옥(2002: 25)[1]은 “방임이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화정 외(2011: 16)[23]에 따르면, 방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이 장기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이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이 예방접종을 적시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등을 제시한다.

문영희(2011: 21)[12]는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예로,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찬엽(2011: 346)[11]은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을 구별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의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방임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반면, 학대는 특정의 소수가 피해자일 경우가 많다.

둘째, 가해자의 행위에 있어서, 방임은 소극적인 행위가 많고 부작위에 의한 무반응의 행태를 띤다. 반면, 학대는 적극적이며 목적을 가진 작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발생 면에서 본다면, 방임은 사건의 지속과 만성적인 행태를 가지므로 계속범적 성격을 갖는다.

넷째, 폭력 등의 정도 면에서 방임보다 학대행위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동방임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아동방임은 주로 저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반면, 아동학대는 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홍미·김효진: 2007: 52)[29]. 그렇기 때문에 아동방임에 대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2015: 8)[16]에서는 2012년도부터 유기를 방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기에 대해 장화정 외(2011: 16)[23]는 “양육자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찬엽(2011: 363)[22]에 따르면, 「아동보호법」상 유기라 함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둬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유기는 형법상 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북학대가 있는데, 이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형 등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학대유형을 말한다.

3.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3.1 아동학대의 발생장소

통계청(2018)[25]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장소의 대부분은 '가정'으로 15,371건, 8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유의한 결과이다. 발생빈도 면에서도 2016년에는 2015년도의 11,715건에 비해 무려 5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

이집의 경우, 아동학대가 2015년에는 43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601건으로 39.1% 증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근처나 길가, 학교, 친척집에서도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생장소를 분석해 볼 때,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학대행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표 3-1〉 주요 아동학대의 발생장소

	2016	2015	2014
전체 합계	18,700	11,715	10,027
가정 내	15,371	9,641	8,610
집근처·길가	353	213	185
친척·이웃	170	97	88
교육기관	1,616	965	663
병원·복지시설	379	411	250

통계청(201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재구성[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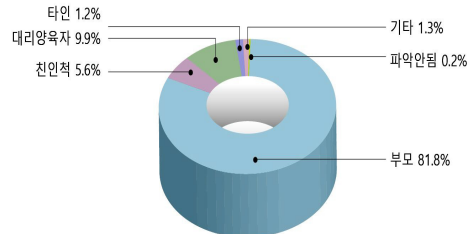
3.2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8-2014년까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80%를 항상 초과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는 발생년도 별 추이에 있어서 감소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만큼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처벌 또는 기타 여러 방법의 학대 금지를 위한 방안의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기타는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 사람, 파악 안 되는 경우 포함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더불어 비록 빈도수에서는 작은 수치이나 ‘부, 모의 동거인’으로부터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아동학대 행위자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부모	4,719 (84.6)	4,734 (83.3)	4,709 (83.2)	5,039 (83.2)	5,370 (83.8)	5,454 (80.3)	8,207 (81.8)
조부모	194 (3.5)	230 (4.0)	182 (3.2)	194 (3.2)	240 (3.7)	176 (2.6)	275 (2.8)
친인척	145 (2.6)	141 (2.5)	144 (2.6)	131 (2.2)	175 (2.7)	150 (2.2)	229 (2.3)
형제자매	22 (0.4)	16 (0.3)	11 (0.2)	89 (1.5)	75 (1.2)	26 (0.4)	55 (0.5)
부,모의 동거인	78 (1.4)	88 (1.5)	82 (1.4)	24 (0.4)	20 (0.3)	86 (1.3)	146 (1.5)
기타	420 (7.5)	476 (8.4)	529 (9.4)	581 (9.6)	523 (8.2)	904 (13.6)	1,115 (11.1)

자료: 통계청(각 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재구성[26].



〔그림 3-1〕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7[16].

3.3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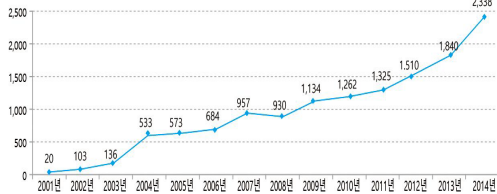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5)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6]에 따르면, 2012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로 '20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979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40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추계 아동인구(만 0-17세) 대비 피해 아동보호율(아동학대판정사례/아동추계인구x1,000)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2년 0.6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신고 접수는 2009년도부터 10%대 이

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또한 재학대는 그 건수에 있어서 2005년 573건, 2008년 494건, 2012년 914건으로 2012년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아동 보호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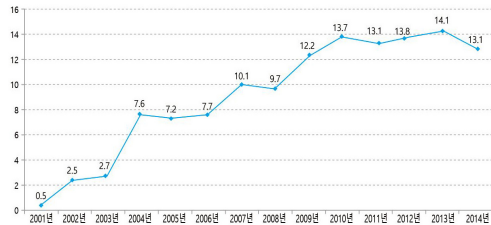
구분	상담 신고 건수	신고 건수	재신고 건수	학대 피해 보호현황보호율		재학대건수
				보호 건수	보호율	
2005	8,000	5,761	573(7.2)	4,633	0.42	573(12.3)
2006	8,903	6,452	684(7.7)	5,202	0.48	492(9.5)
2007	9,478	7,083	957(10.1)	5,581	0.52	646(11.6)
2008	9,570	7,219	930(9.7)	5,578	0.53	494(8.9)
2009	9,309	7,354	1,134(12.2)	5,685	0.55	581(10.2)
2010	9,199	7,406	1,262(13.7)	5,657	0.57	503(8.9)
2011	10,146	8,325	1,325(13.1)	6,058	0.63	563(9.3)
2012	10,943	8,979	1,510(13.8)	6,403	0.67	914(14.3)
2013	13,076	10,857	1,840(14.1)			980()
2014	17,782	15,025	2,338(13.1)			1,027()

자료: 통계청(각 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재구성[26].



〔그림 3-2〕 연도별 재신고 발생건수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2[16].



〔그림 3-3〕 연도별 신고건수 대비 재신고율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52[16].

3.4 피해아동 가족 유형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은 4,458건으로 44.5%였으며, 대리양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건(2.7%), 43건(0.4%)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3,509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5%를 차지한다.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208건(2.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39건(0.4%), 가정위탁 24건(0.2%)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3년 356건에 비해 41.6%가 감소하였다. 대리양육형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친인척, 시설 등 제3자에 의해 양육되어 적응 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 및 입양 가정 선정할 시 부모의 학대 발생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에서는 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37.7%(2,4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형태에서는 인원이 많은 시설보호 분야에서 입양가정이나 가정위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으로 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으로 나타났다.

〈표 3-4〉 피해아동 가족 유형
(단위: 건, %)

구분	계	구분	계
친부모가족	4,458 (44.5%)	부자가정	1,887(18.8)
		모자가정	1,414(14.1)
대리양육형태	271(2.7)	친부모 외 가족 형태	3,509(35.0)
입양가정	39(0.4)	재혼가정	750(7.5)
가정위탁	24(0.2)	친인척보호	297(3.0)
소계	271(2.7)	동거	353(3.5)
기타	43(1.4)	미혼부모가정	208(2.1)
파악 안 됨	336(3.4)	소년소녀가정	10(0.1)
소계	271(2.7)	소계	3,566(55.7)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0[16].

4. 아동학대문제의 해결 방안

4.1 법적 보완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성향을 교정·치료하여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꾀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특별법」, 또는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로서 보안처분 혹은 벌칙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특별법」과 「성폭력특별법」은 주로 성인들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동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처벌적인 조치만으로는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박혜숙·김보기, 2013: 301)[15].

아동학대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학대행위자의 성격, 연령, 주어진 환경, 학대의 내용 등에 따라 처우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학대행위자에게 학대에 대한 벌칙으로서 형사처벌을 과하더라도 학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형법상의 학대죄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고, 그 처벌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망설이게 한다는 점(곽병선, 2005: 443)[2]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등의 보안처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미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이순형, 2014: 262-263)[20].

첫째, 신고의무자가 제도화로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율도 증가하였지만, 그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렇다 해도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강화된 법에 반해 감시제도가 미흡하다. 현재 상태는 과거에 비해 한층 보강되었으나 감시 면에서는 여전히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다.

셋째, 법조문상의 모호성이다. 즉, 신고 시에 ‘지체 없이’라는 용어보다는 특정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경우에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4.2 제도적 보완

피학대아동보호서비스는 두 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구보호’는 아동을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할 때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 시설 등에서의 일시보호보다 원가정 복귀와 입양 등 영구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소제한대안’은 아동과 가족이 아동보호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개입 시 가정 외 보호를 지양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며, 교육, 치료 등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학대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점차 체계화되고 있지만, 피학대아동을 일시보호하거나 중장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는 중장기 보호를 할 경우 기존 아동양육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없는 시설아동과 보호자가 있지만 피학대아동을 한 곳에 보호하기 쉽지 않고, 피학대아동에게는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이순형 외, 2014: 263-264)[20].

4.3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4.3.1 피해아동 초기 조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3.4%인 7,362건으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15: 135)[16].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보호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김향미·홍성대, 2016: 109)[9].

4.3.2 피해아동 최종 조치

피해아동의 최종 조치 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9.8%였고, 종결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5.9%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22.9%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진행 중인 사례보다 약 15%가 상승한 36.0%의 분포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15: 144)[16]. 이는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보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최근 아동학대문제가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혹은 가정에 국한하여 아동학대문제를 다루기에는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인생주기문제 중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은, 사회적 학제, 정신적 학대, 아내학대에 따른 중복학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의식의 가시화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형사정책을 실천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성행을 교정·치료하여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꾀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점차 체계화되고 있지만, 피학대아동을 일시보호하거나 중장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학대위험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보호로 조치 결과가 나와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References

- [1] 강순옥(2002).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곽병선(2005).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20집 : 1-21.
- [3] 김경우 외(2012). 『가족복지론』. 서울: 창지사.
- [4] 김근홍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 [5] 김보기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과주: 양서원.
- [6] 김석조(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유경(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

- 지포럼』. 제143호: 30-4.
- [8] 김지미 외(2016). 『사회문제론』, 과주. 경기: 정민사.
- [9] 김함미 홍성대(2016).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1호: 105-114.
- [10] 노병일(2013). 『사회문제론』. 서울: 창지사.
- [11] 문영희(2009). “아동 학대 의의와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 제27집 : 549-569.
- [12] 문영희(2011). “아동 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박용순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 [14] 박철현(2016). 『사회문제론』. 서울: 박영사.
- [15] 박혜숙·김보기(201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유형별 분석을 통한 조치방안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10권 제2호 : 287-311.
- [16]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17]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아산재단 20년사: 1977~1997』.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18] 원성희(1997). “흡연의 위해인식에 따른 소비자의 건강 보호동기적 행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복희(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3권 제1호.
- [20] 이순형 외(2014).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 [21] 이여진(2012).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 아동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보고서』. 제180호.
- [22] 이찬엽(2011).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제20호 : 343-374.
- [23] 장화정 외(2011). “아동학대 유형별 최종조치에 관한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4] 정혜숙(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 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 109-114.
- [25] 통계청(201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26] 통계청(각 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27] 표갑수(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나남.
- [28] 허경미(2003). “아동학대사범의 교정정책방향 연구”. 『교정연구』. 제18호 : 235-253.
- [29] 홍미·김효진(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

제”. 『보건복지부포럼』. Vol. 128 : 47-59.

김 덕 선(Kim, Duck-Sun)



-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박사
- 수원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 외래교수
- 리더어린이집, 해여림유치원 원장
- 한국사회복지실천정책학회 책임연구위원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상담
- E-Mail : 66-70@hanmail.net